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SK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업무 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대출금융기관”이란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고객”이란 회사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③ “연계신용서비스”란 온라인 상에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이 본인의 명의로 회사에서 개설한 증권계좌 상의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예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고객의 증권계좌를 “대출금융기관”에게 담보제공(질권설정)하여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 실시간 담보관리시스템(이하 “담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체크,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④ “담보관리시스템”이란 고객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고객이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보유 및 매수제한 등)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하며, 대출금융기관은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수 가능한 종목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을 체크하며, 자동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제3조(서비스의 신청)

- ① 고객은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 신청을 하고 별도의 연계신용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연계신용서비스 신청이 성립된다.
- ② 고객은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대출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며,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 한다.
- ③ 고객은 연계신용서비스 신청시 담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매수의 제한)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계좌는 다음 각호 종목의 대출금을 이용한 매수를 제한 한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현금 배당락 제외)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분할/액면분할/액면병합 예정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15. 실시간 담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5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연계신용서비스 신청시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하여 보유불가종목 및 반대매매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시기를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6조(증권업무 제한 등)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계좌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한하여 100% 현금 매매거래만 가능 하며, 기타 업무제한은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제7조(질권의 설정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 ① 고객은 대출금융기관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설정신청서를 회사 또는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
- ③ 담보비율(%)은 $[(\text{실시간})\text{증권계좌담보평가액}(\text{주식, ETF}(\text{상장지수펀드})) \text{평가금액} + \text{D+2일예수금}) / \text{대출원금}] \times 100$ 로 산정한다.
- ④ 매수금지종목, 거래정지종목 등을 보유한 경우 담보평가금액 산정은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제8조(담보의 제공 등)

- ① 고객은 연계신용서비스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ETF(상장지수펀드)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대출금액에 대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융기관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 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자산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 ③ 제 1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현금 또는 주식, ETF(상장지수펀드)에 한한다.

제9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주식, ETF(상장지수펀드), 그 밖의 증권 등을 제3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융기관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 보유종목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연계신용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1.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보자산, 그밖의 증권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반대매매 종목순서는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순서에 따른다.

나. 처분당일 오전 8시45분까지 현금 입금 및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입고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 처분된다.

2. 기타 반대매매 순서 안내

가. 기타 보유불가종목 등에 반대매매는 고객이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 한다.

제10조(시스템에 의한 매매조건 설정)

① 고객은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매도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매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도주문이 실행 된다.

② 고객은 연계신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량, 액면가,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된 조건의 범위를 이탈하는 주문은 그 실행이 거부 된다.

제11조(기한의 이익 상실)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2조 (서비스의 해지)

고객이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한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계신용서비스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에게 통보 후 자동으로 해지되며 질권도 소멸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금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 서비스 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담보비율 관련 안내)

- ①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비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안내가 고객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① 연계신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 또는 회사가 연계신용 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 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